

G-inK 회칙

前文

한국과학기술원(KAIST) Green in KAIST(줄여서 G-inK, 징크)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도 간섭 받지 않는 독립적 단체이다. G-inK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친환경 캠퍼스 사업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활동 이념으로 삼는다. 이에 G-inK는 단체의 활동 이념을 바탕으로 단체 내 민주적 자치를 이루고자 본 회칙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Green in KAIST, 줄여서 G-inK 또는 징크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지위) 본회는 KAIST 구성원들을 위한 친환경 캠퍼스 사업을 수행하는 학부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이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한다.

1. KAIST 캠퍼스, 더 나아가 전 지구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 KAIST 캠퍼스 내의 환경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수행해 나간다.
3. KAIST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활동을 진행하여 구성원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킨다.
4. KAIST 구성원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심의·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심의·의결기구: 전체총회, 팀장단 회의, 정기모임
2. 집행기구: 회장단, 생태시설팀, 생활습관팀, 소통교류팀, 학생문화팀, 탐구정보팀.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팀장단 회의를 통해 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1.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3. 본 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G-inK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6조 (기록물 관리) 본회는 본회의 제반사업을 진행할 시 항상 그 근거가 되는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남겨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심의 및 투명성 증빙이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에 의해 완료된 증빙자료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회장단 회의, 비전 워크숍 회의록 및 발표자료
2. 프로젝트 기획서 및 보고서
3. 타 단체와의 서신 및 회의록
4. 본회가 사용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5. 기타 본회의 운영 투명성을 증빙할 기록물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녀야 한다.

1. KAIST 학부과정에 재적중인 자.
2.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투철한 자.
3.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8조 (회원의 선발) 본회의 회원은 매학기 초 1회의 리크루팅을 통해 모집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팀장단 회의를 통해 학기마다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활동기간)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활동회원으로서 활동해야 한다.

1. 본회의 회원은 최소 2 학기 이상 연속으로 활동해야 한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팀장단 회의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본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직전 정규 학기에 활동회원이 아니었던 본회의 회원이 다시 활동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활동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활동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활동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회장단의 인준을 통해 이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활동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활동회원은 본회의 제반활동에 대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포함,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 활동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활동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니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팀장단 회의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본회의 회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할 수 있다.

1. 활동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2. 활동회원은 정기모임과 팀회의, 비전 워크샵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3. 활동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4. 활동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5. 활동회원은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전체총회

제12조 (지위) 전체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제13조 (구성) 전체총회는 본회의 모든 활동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4조 (형식) 전체총회는 활동회원의 연석 또는 총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15조 (의장) 전체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부회장 역시 부재 시 총무가 그 직을 대신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모두 부재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총회의 경우 전체총회 당시 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팀장단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6조 (업무) 전체총회는 다음 각 항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본회의 회칙개정안 심의 및 의결
2.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 탄핵
3. 기타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

제17조 (소집) 전체총회는 본회 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팀장단 회의 의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18조 (의결) 전체회원 2/3의 참여와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공고) 전체총회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정기모임

제20조 (지위) 정기모임은 본회의 상설적인 심의의결기구이다.

제21조 (구성) 정기모임은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 (의장) 정기모임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부회장 역시 부재 시 총무가 그 직을 대신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모두 부재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기모임 당시 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팀장단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23조 (업무) 정기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회장단을 비롯해 각 팀의 일주일간 활동사항을 발표한다.
2. TF를 제안·결성하고 TF의 일주일간 활동사항을 발표한다.
3. 각 팀과 TF의 활동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4. 기타 본회의 제반활동을 논의한다.

제24조 (소집) 정기모임은 매주 열리며, 논의안건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정기모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활동회원들은 매주 열리는 정기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불참할 시에는 본 회칙 11조에 의하여 회원 명부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25조 (의결) 정기모임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팀장단 회의

제26조 (지위) 팀장단 회의는 본회 제반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총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시 심의의결기구이다.

제27조 (구성)

1. 팀장단 회의는 회장단과 각 팀의 팀장으로 구성된다.
2. 팀장단의 임기는 회칙에서 정하는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또는 해임, 그리고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와 자진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8조 (의장) 팀장단 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부회장 역시 부재 시 총무가 그 직을 대신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모두 부재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팀장단 회의 당시 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팀장단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29조 (업무) 팀장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회장단을 비롯해 각 팀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2. 본회의 운영상의 상시적 의사수령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의결한다.
3. 본회의 목적과 운영방향을 논의한다.

4. 팀 간 협업에 관해 논의한다.
5. 전체총회에 본회 회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6. 전체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본회의 한 학기 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8. 기타 전체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9. 그 외 긴급히 논의를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 회장단이 소집한다.

제 30조 (소집) 팀장단 회의는 매주 소집되며, 논의안건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회장단 회의를 통해 팀장단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의원들은 매주 열리는 팀장단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원직을 대신하게 한다.

제 31조 (의결) 팀장단 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장단

제32조 (지위)

1. 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단은 본회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집행기구이다.

제33조 (구성)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다.

제34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당선일 다음날부터 익년도 마지막 정모 때까지로 한다.

제35조 (신분보장)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전체총회에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6조 (권한대행) 회장단이 모두 궐위 때에는 팀장단 회의를 소집, 의결을 통해 팀장단 중에서 2인을 뽑아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게 한다.

제37조 (업무 및 권한)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팀장단 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2.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3. 회장은 전체총회, 정모, 팀장단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직을 맡을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부회장 역시 직을 맡을 수 없는 경우 총무가 그 직을 대신한다. 또한 회장단 중 의장이 아닌 사람 한 명은 회의의 서기를 맡는다.
4. 전체총회와 팀장단 회의의 의결사항 중 회장단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리크루팅을 통해 새로운 회원을 뽑는다.
6. 비전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7. 본회의 전반적인 재무를 관리한다.
8. 팀장단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며, 회장단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하며, 회장단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임시회는 긴급히 논의를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논의사항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 (탄핵)

1.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 회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2.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전체총회에서 의결하며 각 호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전체총회를 진행한다.
 - ①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 부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 ② 회장과 부회장 모두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 총무가 의장을 맡는다.
 - ③ 회장단 모두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 전체총회 당시 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팀장단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3. 회장단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팀장단 중 2인이 회장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회장단 탄핵 안건이 전체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7장 회장단 선거

제40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41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활동회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2조 (피선거권 제한 금지) 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징계 여부, 평정, 경력, 재학기간, 학과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제약받거나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 후보자로 등록할 시 징계 여부와 전과기록은 징계사유와 함께 공개한다.

제43조 (선거 시기) 회장단의 선거 시기는 임기 년도 전년 마지막 정기회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팀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 (선거 방법) 회장단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후보에 나설 활동회원은 당시의 회장단에 후보 진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 때,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만 출마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직무에 동시 출마할 수도 있다.
2. 임기 년도 전년 마지막 정기회에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며, 해당 년도 회장단이 주최한다.
3. 본회 회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동률이 나왔을 경우에는 생년월일시를 따져 먼저 태어난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4.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진행, 유효투표 중에서 찬성투표가 과반수일 때 당선으로 한다.

제45조 (재임불가) 직무에 상관없이 회장단의 재임은 불가능하다.

제46조 (보궐선거)

1. 회장단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일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2.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47조 (당선무효)

1. 활동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해 해당년도 팀장단에 제소할 수 있다.
2. 해당년도 팀장단은 이를 심사하고, 재적인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3.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이전 회장단은 30일 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48조 (비상대책위원회) 후보자 미등록으로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단 모두 유고상황인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며, 새로 회장단을 뽑을 때까지 그 직을 대행한다.

제8장 비상대책위원회

제49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회장단 모두가 유고상황인 경우 회장단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 (구성)

1.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①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 ② 회장단 모두가 사퇴할 때
 - ③ 회장단이 탄핵되었을 때
 - ④ 그 외의 사유로 회장단 모두가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팀장단은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3. 팀장단은 모집 공고 후 20일 이내에 팀장단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팀장단 의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단, 이를 위한 팀장단 회의의 의장이 부재할 경우, 팀장단 회의 참여자들의 의결에 의해 팀장단 중 1인이 의장을 맡는다.

제51조 (업무 및 권한)

1.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단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단의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제52조 (위원장)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 2인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팀장단 회의에서 팀장단 의원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9장 팀

제53조 (지위) 각 팀은 본회의 목적과 각자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54조 (구성) 본회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장단 회의를 통해 팀의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1. 생태시설팀은 캠퍼스 내의 생태계와 시설 및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 생활습관팀은 교내 구성원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3. 소통교류팀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회의 활동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한편, 교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본회의 대내외 소통을 맡는다.
4. 학생문화팀은 축제 등 KAIST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유의 학생문화를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감으로써 KAIST의 친환경 문화를 장려한다.

5. 탐구정보팀은 본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내 구성원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학술 및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제55조 (업무 및 권한)

1. 각 팀은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진행한다.
2. 각 팀은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경우 회장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 팀은 1차 비전 워크숍 전까지 회장단에 해당 학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차 비전 워크숍 때까지 다음 학기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56조 (팀장)

1. 팀장은 1차 비전 워크숍에서 회장단의 호선에 의해 선발되며, 팀내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팀장을 맡을 수도 있다.
2. 팀장은 팀장단 회의의 의원이 되며, 팀장단 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3. 팀장은 팀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팀장의 임기는 1차 비전 워크숍부터 뒤따르는 학기 1차 비전 워크숍까지로 한다.

제57조 (팀회의) 팀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며, 팀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이 맡는다.

1. 정기회는 주 1회로 하며, 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은 정기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2. 임시회는 긴급히 논의를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경우 팀장이 소집한다.
3. 논의사항 및 보고사항이 없을 경우 팀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장 TF

제58조 (지위) TF는 본회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특정 팀의 프로젝트로는 부적합한 단발성 사업을 진행하는 기구이다.

제59조 (구성) TF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1. TF를 결성하고자 하는 활동회원은 회장단에 TF 결성 의사를 밝혀야 한다.
2. 제안자는 다음 정기모임에서 TF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사항을 발표, TF 회원을 모집한다.
3.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인원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TF가 구성된다.
4. 구성된 TF는 1주일 이내에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회장단의 인준에 따라 TF 결성이 확정된다.
5.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TF가 그 소임을 다했거나 더 이상의 프로젝트 진행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경우 TF는 해산된다. 해산된 TF의 회원들은 다음 비전 워크숍까지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업무 및 권한)

1. 활동회원은 TF를 통해 원하는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팀장단의 인준을 거쳐 이를 진행할 수 있다.
2. TF는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경우 회장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3. TF 제안자는 TF 구성 1주일 이내에 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해산된 후에는 다음 비전 워크숍까지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1조 (TF장)

1. TF 제안자가 TF장을 맡으며,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TF 내에서 인준된 1인이 TF장을 맡는다.
2. TF장은 TF의 운영 전반을 맡으며, 팀장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단 회의나 정기모임에서 활동에 대한 진행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제11장 비전 워크샵

제62조 (지위) 비전 워크샵은 한 학기 동안의 본회의 활동을 되짚어보고 방향성을 정하는 한편, 다음 학기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논의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제63조 (구성) 비전 워크샵은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4조 (의장) 비전 워크샵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부회장 역시 부재 시 총무가 그 직을 대신한다. 회장, 부회장, 총무가 모두 부재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비전 워크샵 참석인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해 팀장단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65조 (업무) 비전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이전 학기 프로젝트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2. 다음 학기 팀 구성 및 팀장 선출
3. 다음 학기 프로젝트 활동 계획
4. 본회의 활동 목적과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
5. 회장단 및 각 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
6. 회칙에 대한 논의 및 개선점 논의
7.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사항

제 66조 (소집) 비전 워크샵은 매년 여름학기과 겨울학기에 각각 두 차례씩 소집되며, 1차 비전 워크샵과 2차 비전 워크샵으로 나뉜다.

1. 1차 비전 워크샵은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2. 2차 비전 워크샵은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 전 마지막 주말에 실시한다.
3. 모든 활동회원은 1·2차 비전 워크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으로 불참할 시 본 회칙 11조에 따라 회원 명부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67조 (의결) 비전 워크샵에서 의결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재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재정

제68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교 지원금과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제6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0조 (기타 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수입 내역에 맞게끔 집행한다.

제71조 (예산) 매학기 회장단과 각 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팀장단 회의에서 논의한다.

제72조 (프로젝트 진행 및 영수증 관리)

1. 원칙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 모든 프로젝트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불가피한 경우 간이영수증 또한 허용한다.
3. 영수증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제73조 (결산)

1. 회장단은 매학기 결산안을 작성해야하며, 결산안은 세부 내역이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
2. 결산안은 당해 학기 예산안과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13장 회칙개정

제74조 (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본회 회원 1/2 이상의 발의
 - ② 팀장단 회의 의원 1/3 이상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①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② 현행 회칙
 - ③ 개정 회칙안

제75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팀장단 회의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전체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 또는 팀장단 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확정한다.

제77조 (공포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을 지정한 후 통과되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받는다.

제78조 (해설서의 반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